

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8. 9. 5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8. 9.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건표)

가. 제안이유

- 국내여비는 부천시여비조례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고 국외 여비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없어 상위법에 준용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을
- 국내·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규정을 포함한 부천시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여비조례중 국내여비규정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포함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부천시여비조례를 개정
- 구체적인 적용대상
 -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토록 한 내용삭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통합하면어떤 것이 좋은지?</p>	<p>○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외여비 적용시 별도의 상위법에 의한 여비를 적용하던 것을 금번 공무원여비규정이 통합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천시여비조례로 여비 지급이 가능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상위법이 통합개정되어 준칙에 의한 시·군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부천시여비조례(1991. 1. 7 조례 제1088호)가 있었으나, 국외여비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없어 국외여비규정은 대통령령을 준용하였음
- 국내·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된 “공무원여비규정(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이 제정됨에 따라
- 국외여비규정을 포함한 부천시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부천시여비조례중 “국내여비규정”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포함된 “공무원여비규정(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에 준용하도록 규정
- 적용대상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토록 한 내용은 삭제
- 국외여비의 지급기준, 항공비, 국외이전비 등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음

□ 첨부

- 부천시여비조례전문
- 공무원여비규정전문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호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